

7. 駐車場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230號 1990.4.7 公布

駐車場法중 다음과 같이改正한다.

第2條第1號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附設駐車場 : 第19條 또는 第19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建築物, 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에 附帶하여 設置된 駐車場으로서 당해 建築物, 施設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第2條第2號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道路”라 함은 道路法 第11條 및 都市計劃法 第2條第1項第1號나目的 規定에 의한 道路를 말한다.

第3條중 “都心商業地域 또는 그周邊地域안의”를 “商業地域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으로서”로, “區域”을 “地域”으로 하고, 同條에 第2項을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②駐車場整備地區안에 建築하는 駐車專用建築物의 建蔽率, 基地面積의 最小限度 및 容積率에 대하여는 建築法第39條, 第39條의 2 및 同法第4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大統領令으로 그 基準을 따로 정할 수 있다.

第4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4條(駐車場整備計劃) ①建設部長官은 駐車場整備地區를 지정한 때에는 市長·郡守의 申請에 의하여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안의 駐車場整備에 관한 計劃(이하 “駐車場整備計劃”이라 한다)을 都市計劃으로 決定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駐車場整備計劃을立案하여 建設部長官에게 申請하여야 한다. ②駐車場整備計劃은 駐車場設置에 관한 基本方向과 市長·郡守가 設置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에 대한 計劃(이하 “路外駐車場設置計劃”이라 한다)을 포함하되,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안의 駐車需要를 점차적으로 路外駐車場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駐車場整備計劃을立案할 때에는 당해 駐車場整備地區에 대한 다음 각號의 사항을 조사하여 駐車場整備計劃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土地利用 現況
2. 交通施設 및 交通量 現況
3. 駐車實態

④駐車場設置에 관한 基本方向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 포함되어야 한다.

1. 駐車需要의 長期 豫測
2. 駐車場의 概略的 位置
3. 路外駐車場, 路上駐車場, 附設駐車場의 配分
4. 投資計劃

⑤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路外駐車場의 位置 및 面積
 2. 路外駐車場의 形態(建築物 또는 工作物인 경우에는 建蔽率, 容積率, 높이 및 駐車方式)
 3. 路外駐車場의 誘致圖 및 駐車容量
- 第6條 및 第7條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第6條(駐車場設備基準等) ①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②市長・郡守는 다음 各號의 行위를 하는 경우에는 都市計劃 및 都市交通整備促進法에 의한 都市交通整備基本計劃에 따라 이를 하여야 하며, 미리 管制警察署長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駐車場整備地區의 指定申請
2. 駐車場整備計劃의 立案
3. 路外駐車場 또는 路外駐車場의 設置

第7條(路上駐車場의 設置 및 廢止) ①路上駐車場은 市長・郡守가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都市計劃法 第16條第1項

의 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②市長・郡守가 路上駐車場을 設置함에 있어서 駐車場整備計劃이 決定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整備計劃의 基本方向에 따라야 한다.

③市長・郡守는 駐車로 인하여 大衆交通手段의 運行障礙를 주는 경우 또는 路上駐車場에 대체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등으로 路上駐車場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路上駐車場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路上駐車場을 廢止하여야 한다.

第9條第1項 但書중 “道路交通法 第2條第13號”를 “道路交通法第2條第16號”로 한다.

第12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12條(路外駐車場의 設置) ①都市計劃區域안에서의 路外駐車場은 市長・郡守가 이를 設置한다. 이 경우 駐車場整備計劃이 決定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整備計劃에 의한 路外駐車場設置計劃에 따라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市長・郡守외의 者가 都市計劃區域안에서 路外駐車場을 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路外駐車場의 構造를 變更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하는 때에는 당해 路外駐車場設置에 대한 計

劃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제출된 計劃書가 駐車場整備計劃에 의한 駐車場設置에 관한 基本方向(駐車場整備計劃이 決定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第 6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計劃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路外駐車場設置를 완료한 者는 7 日이내에 그 사실을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申告를 받은 날부터 7 日 이내에 당해 駐車場이 그 設置計劃書의 내용과 일치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申告畢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은 第 4 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畢證을 받기 전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第 12 條의 2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第 12 條의 2 (團地造成事業에 따른 路外駐車場) ①宅地開發事業・產業基地開發事業・都市再開發事業 기타 團地造成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이하 “團地造成事業”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때에는 一定規模 이상의 路外駐車場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事業의 종류와 規模, 路外駐車場의 規模와 管理方法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5 條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하고, 第 3 項을 刪除하며, 第 4 項 및 第 5 項중 “第 3 項”을 각각 “第 2 項”으로 한다.

②第 12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管理者는 당해 駐車場을 一般의 이용에 제공하기 전에 建設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駐車料金과 駐車場의 管理・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管理規定으로 정하여 市長・郡守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第 5 章(第 19 條 내지 第 19 條의 4)을 다음과 같이 한다.

第 5 章 附設駐車場

第 19 條(附設駐車場의 設置) ①都市計劃區域안에서 建築物・골프練習場 기타 駐車需要를 誘發하는 施設(이하 “施設物”이라 한다)을 建築 또는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施設物의 内部 또는 그 敷地안에 附設駐車場(貨物의 荷役 기타 事業遂行을 위한 駐車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附設駐車場은 당해 施設物의 利用者 또는 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施設物의 종류와 附設駐車場의 設置基準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第 1 項의 경우에 附設駐車場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規模 이하인 때에는 同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施設物의 敷地附近에 單獨 또는 共同으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수 있다. 이 경우 施設物의 敷地附近의 범위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⑤第 1 項의 경우에 施設物의 位置・用途・規模 및 附設駐車場의 規模등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駐車場의 設置에 소요되는 費用을 市長・郡守에게 납부함으로써 附設駐車場의 設置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된 費用은 그에 갈음되는 路外駐車場의 設置외의 目的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⑥市長・郡守는 第 5 項의 規定에 의하여 駐車場의 設置費用을 납부한 者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한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안에서 市長・郡守가 設置한 路外駐車場을 無償으로 사용할 수 있는 權利를 賦與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가 變更되는 때에는 새로운 所有者가 前所有者的 路外駐車場使用權을 承繼한다.

⑦第 5 項 및 第 6 項의 規定에 의한 設置費用의 算定基準 및 設置費用에 상응하는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部令으로 정한다.

第 19 條의 2 (附設駐車場의 追加設置)

①市場・郡守는 觀覽集會施設・販賣施設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用途 및 規模

의 施設物로 인하여 駐車需要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당해 施設物의 所有者로 하여금 第 19 條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에 따로 附設駐車場을 設置할 것을 命할 수 있다.

②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따로 設置하게 할 附設駐車場의 設置場所・設置基準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 19 條의 3 (附設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제공)

①第 19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하여 附設駐車場을 一般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者는 미리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 申告畢證을 받아야 한다.

②一般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附設駐車場과 당해 施設物의 종류 및 規模・一般의 利用時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③第 12 條第 5 項・第 13 條 내지 第 18 條의 規定은 第 1 項의 附設駐車場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第 19 條의 4 (附設駐車場의 用途變更禁止 등)

①附設駐車場은 駐車場외의 用途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市長・郡守는 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당해 施設物의 所有

者에게 原狀回復을 命하여야 한다. 이 경우 施設物의 所有者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行政代執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原狀回復을 代執行할 수 있다.
③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다른 用途로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施設物을 建築法第 42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違反建築物로 보아 同條第 2 項 本文의 規定을 適用한다.

第 20 條第 2 項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道路・廣場・公園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學校등의 公共施設의 地下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기 위하여 都市計劃法第 24 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의 施行許可 또는 第 25 條의 規定에 의한 都市計劃事業의 實施計劃認可를 받은 때에는 道路法・都市公園法・學校施設事業促進法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關係法令에 의한 占用許可를 받거나 土地形質變更에 대한 協議등을 한것으로 보며, 路外駐車場으로 사용되는 土地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占用料를 減免할 수 있다.

③第 2 項의 規定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供施設의 地上에 路外駐車場을 設置하는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第 21 條第 3 項중 “第 19 條第 6 項”을 “第 19 條의 2 第 1 項”으로 한다.

第 21 條의 2 第 2 項第 1 號중 “第 19 條第 4 項”을 “第 19 條第 5 項”으로 한다.

第 24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24 條(營業停止等) ①市長・郡守는 第 12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路外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第 19 條의 3의 規定에 의한 附設駐車場의 管理者가 다음 각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月 이내의 期間을 정하여 당해 駐車場의 一般利用에의 제공을 금지하거나 300 萬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1. 駐車場의 構造・設備基準등이 第 6 條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게 된 때
2. 第 15 條第 2 項(第 19 條의 3 第 3 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程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駐車料金을 받은 때
3.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處分에 위반한 때

②市長・郡守가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處分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그 代理人에 대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는 機會를 賦與하여야 한다. 다만, 駐車場의 管理者 또는 그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 26 條를 削除한다.

第 29 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 29 條(罰則) ①第 19 條의 4 第 1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附設駐車場을 駐車場의 用途로 사용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5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② 다음 각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 한다.

1. 第 19 條의 2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者

2. 第 24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禁止 期間중에 駐車場을 一般의 이용에 제 공한 者

第 30 條第 1 項第 1 號중 “第 12 條第 2 項但書”를 第 12 條第 2 項”으로 하고, 同項第 2 號를 다음과 같이 하며, 同項에 第 3 項를 다음과 같이 新設한다.

2. 第 12 條第 5 項(第 19 條의 3第 3 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駐車場을 一般의 이용에 제공한 者

3. 第 15 條第 2 項(第 19 條의 3第 3 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管理規程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駐車料金을 받은 者

第 30 條第 2 項第 1 號 내지 第 3 號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第 16 條(第 19 條의 3第 3 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路外駐車場에 대한 일반의 이용을 중지 또는 廢止한 者

2. 第 17 條第 2 項(第 19 條의 3第 3 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駐車場에 대한 一般의 이용을 거절한 者

3. 第 18 條第 1 項(第 19 條의 3第 3 項에서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위반하여 標識를 設置하지 아니한 者

附 則

①(施行日) 이 法은 1990 年 7 月 1 日부터 施行한다.

②(路外駐車場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市長・郡守의 許可를 받아 設置한 路外駐車場은 이 法에 의하여 市長・郡守에게 申告를 하고 申告畢證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團地造成事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施行전에 關係法令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에 대한 許可・認可등을 받았거나 許可・認可등을 申請한 경우에는 第 12 條의 2의 改正規定은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